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 공공한옥’은 서울시가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한옥을 매입·리모델링한 후 다양한 용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모 대상 한옥(종로구 원서동 24외1)은 창덕궁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한옥의 전통 미와 예술성을 갖춘 외부디자인을 창출하고 현대적 기능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한 내부 공유 공간을 마련해 우수 공공한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건립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금회 공모를 통해 공공한옥의 건립취지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 입주 공동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본 한옥은 서울시 소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본 한옥의 공모 및 운영관리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한옥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공한옥 설계취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동체 구성원
모집기간	2021. 12. 20.(월) ~ 2022. 1. 7.(금)
입주예정기간	2022. 1. 20.(목) 입주자 선정 발표후 즉시 입주 가능 (지정기한내 입주)
연 사용료	8,990,640원 (입주시점 일시납, 부가세포함, 공동체 총납부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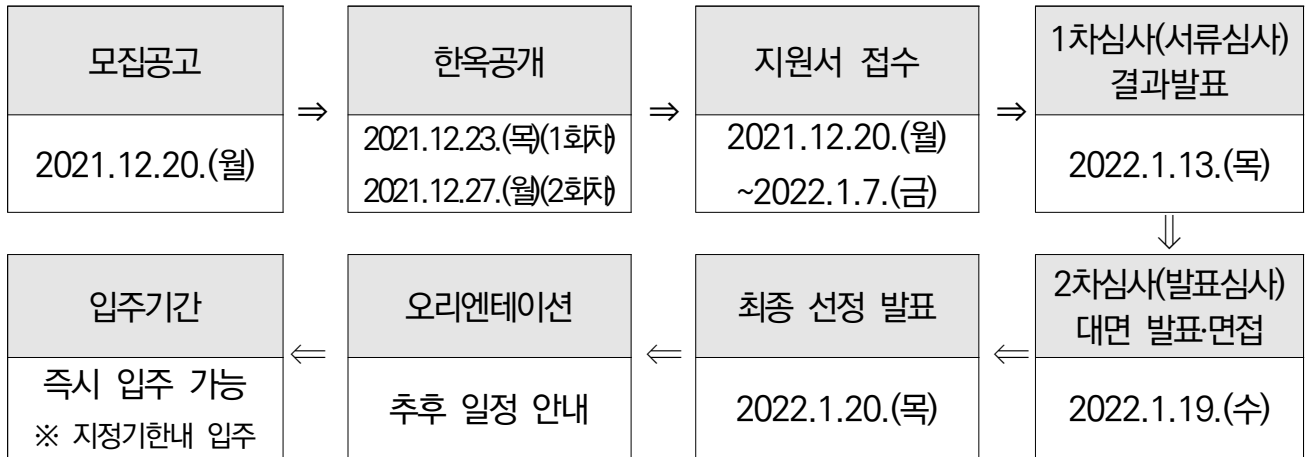
입주 한옥(종로구 원서동 24외1) 전경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일정

□ 공모일정



-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개별 통지함
- ※ 지원자가 현저히 적어 연장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 시에는 홈페이지 추가공지)

2 입주예정 공공한옥 개요

□ 대상지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4외1 (창덕궁5길 15)

○ 한옥 시설 및 공급 면적

위 치 (도로명주소)	규 모(㎡)		시설 (용도 : 공동체한옥)
	대지	건물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4외1 (창덕궁5길 15)	139.9	192.25 (연면적)	<지상 1층> 개별 주거공간(4개실), 화장실(3), 공유주방(1) <지하 1층> 커뮤니티 공간(공유주방, 홀 등), 세탁실(1)

- ※ 해당 한옥은 한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계절간 온도차가 클 수 있으며 생활 방식에 따라 동일 전용면적대비 공공주택보다 높은 냉난방비가 발생할 수 있음.
- ※ 커뮤니티 공간 등 한옥 내 모든 시설은 서울시와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상업시설로 전용할 수 없으며 한옥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할 수 없음.
- ※ 전용 개별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공간 등에 관한 문의는 종로구 시설 관리공단에 문의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및 입지여건

공공한옥 위치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4외1) ※ 도로명 : 창덕궁5길 15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도보 13분, 100미터 이내 마을버스 정류장
 - 인근에 창덕궁, 북촌한옥마을 등 서울 명소 위치

3 주거 요건

□ 주거비 (연 사용료 등)

- 연 사용료: **8,990,640원 (일시납)**
 ※ 부가세 포함. 입주공동체 총납부액 기준이며 2년차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된 사용료가 부과됨.
- 일반관리비(공과금 등), 보험료는 입주공동체의 자기 부담이며 사용자 과실에 의한 파손 망실 등은 입주시 공유재산(본 한옥) 사용허가조건에 따름

□ 계약기간 및 재계약 조건

- 계약기간: 2년
- 재계약: 아래 기준에 의거 1회에 한해 추가 1년 재계약 가능

구분	내용
재계약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공동체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실적 제출 후 이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얻을 것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 ○ 최초 공고일 이후 입주자 전원 무주택 요건 계속 충족할 것 ○ 사용료 체납,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시설물 파손·망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 재계약시점 3개월 전까지 공사의 안내에 따라 제출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연체이자

- 2년차부터는 서울시(공사)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내에 연 사용료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가 추가 부과됨.
- 3회 이상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이 체납된 경우 공유재산(본 한옥) 사용허가조건 내용에 의거하여 사용허가가 해지될 수 있음.

4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된 입주팀 (3인 이상 4인 이하)

입주 지원 자격
○ 서울시 북촌 일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 가능할 것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 제출 의무 있음)
○ 우리 한옥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설계취지에 적합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 가능할 것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일 것
○ 입주일로부터 퇴거시까지 해당 공공한옥에 전입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을 것 (재임대 또는 구성원 임의변경 불가)
○ 공동주거를 위한 자치규약 제정 및 제출에 동의할 것
○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등)를 체납하거나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을 것

5

선정기준

□ 1차 심사 (서류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1) 서울시 거주기간 (10점 만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입주자 평균 서울시 거주기간	· 3년 이상	10
※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 모집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만 인정되며 과거 서울시 거주이력이 있더라도 최종전입일로부터 기간만 산정함. 1인당 최대 6년까지만 산입하여 산정	· 1년 이상 3년 미만	5
	· 1년 미만	3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활동계획서 (40점 만점) ※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심사항목		배점
커뮤니티 활동 계획서 평가 (40점)	한옥 공간활용계획의 적합성	10
	커뮤니티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지역 공동체 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	15

3) 가점 항목 (최대 5점)

공동체 관련 자격증 소지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등)	배점
2인 이상이 관련 자격증 소지	5
1명 이상이 관련 자격증 소지	3

- 심사방법: 위 점수합계에 따라 5배수 선발하여 발표·면접 평가 응시기회 부여
- ※ 5배수내 합격자는 공사의 별도안내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발표용 포맷(PPT,PDF 등 파일유형은 불문)으로 개별 작성하여 2021.1.18.(화) 18:00까지 최초 지원시 지원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야 함.
- 결과발표 : 2022.1.13.(목) 18시 공사 홈페이지 게시

□ 2차 심사 (발표·면접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발표·대면 인터뷰 평가 (50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실행력, 의지	25
	개별 구성원의 운영 역량, 적극성 평가	25

- 심사일정: 2022.1.19.(수) 14:00~ 예정
- 심사방법: 내·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대면 평가하며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 평가위원회의 세부구성 및 개별 심사내역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최종 선정: 서류심사 및 발표·면접 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1배수 선발
- ※ 예비합격 공동체(2순위)는 본합격 공동체(1순위)의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 의사 확인하여 입주
- 결과발표: 2022.1.20.(목) 18시 공사 홈페이지 게시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및 접수안내

□ 한옥(현장) 현장공개

○ 제1차 공개회

- 1) 일시: 2021.12.23.(목) 14:00~16:00
- 2) 장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4 (창덕궁5길 15)
- 3) 참석대상: 본 공모에 관심 있으신 모든 시민 방문 가능하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면행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 입주희망 공동체별 1인만 방문 권고
※ 발열 체크 등 실시 후 입장하게 되므로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으신 분은 참석이 불가하며 다음 차시 공개회를 이용
- 4) 공개범위: 한옥 내외부 전체 관람가능

○ 제2차 공개회

- 1) 일시: 2021.12.27.(월) 14:00~16:00
- 2) 장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4 (창덕궁5길 15)
- 3) 참석대상: 본 공모에 관심 있으신 모든 시민 방문 가능하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면행사 최소화 방침에 따라 입주희망 공동체별 1인만 방문 권고
- 4) 공개범위: 한옥 내외부 전체 관람가능
※ 위 제1차 공개회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마찬가지로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으신 분은 참석 불가

□ 신청서 접수기간: 2021. 12. 20.(월) ~ 1. 7.(금) 18시

-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개별 통지함
- ※ 지원자가 현저히 적어 연장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시에는 홈페이지 추가공지)

□ 제출방법: 다음의 E-mail 주소 중 하나로 제출

(clouser@i-sh.co.kr, clotilde0320@i-sh.co.kr)

- ※ 서류 접수시 확인 메일을 회신하므로 확인메일이 오지 않는 경우 반드시 공사에 확인
- 무주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지원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격은 취소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부서	전화	이메일
공모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총괄부	02-3410-7324,7322	clouser@i-sh.co.kr clotilde0320@i-sh.co.kr
주택·시설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관리부·사업부	02-3410-7743,7748	emlee@i-sh.co.kr terracan@i-sh.co.kr

□ 제출서류 (최초 지원시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 ① [붙임1] 입주신청서
- ② [붙임2] 공동체 활동계획서
- ③ [붙임3]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④ 주민등록표초본 (과거주소변동 포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용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지 않게 발급
- ⑤ 미과세증명서 (2021년)
 - 항목 : 재산세(주택)
 - 발급방법: 가까운 구청(세무 부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
 ※유의사항: “전국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하여야 함
 (전국 단위 미과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 방문)

7

공공한옥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 관련]

- 입주자로 최종선정된 공동체는 계약종료시까지 전원이 무주택 등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상의 입주자 전원이 구성원 변동 없이 입주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개별퇴거의 경우에도 6개월 안에는 구성원 총원·변경 불가
- 입주자 전원 입주협의 기간 내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입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30일 내 공사 승인을 거쳐 총원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최초 입주 구성원 수 이상(최대 4인)을 유지해야 함. 예) 4인 신청 시 입주종료일까지 4인 이상 유지
 - 입주자 총원 시에는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격(무주택 등)을 만족하는 분을 공사의 승인(무주택 등 확인에 필요한 별도 서류 징구)을 받아 입주시킬 수 있음
 - 총원 대상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동체 자체규약에 따로 정할 수 있음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임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의무가 있으며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부분과 보수 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수선은 입주자가 부담) 퇴거 시 시설물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 회복 혹은 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공과금 등은 입주자들이 자체 배분하여 부담함
- 입주자는 본 한옥에 대하여 서울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함 (입주자선정 후 별도 안내)
- 입주자는 서울시(공사)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재산의 명도를 확약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서울시(공사)와 입주자가 50%씩 부담함 (입주자선정 후 별도 안내)
- 재계약 희망 시 서울시(공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입주종료일 3개월 이전에 활동보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입주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또는 공동체생활을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사용허가가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서울시는 청사, 관사,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에는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0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주신청서

‘서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 신청서

1. 공동체명			
2. 공동체 대표자	(입주구성원중 대표자 기재)	3. 대표 이메일	(공모 관련 연락 이메일 기재)
4. 대표 연락처	(공모 관련 연락 전화번호 기재)	5. 공동체 인원수	(입주인원만)
6. 입주 희망자 (모두 기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홍길동	1990-01-01	남	010-1234-5678
...			
..			

위와 같이 ‘서울한옥 공동체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본인 성명 기재시 서명으로 간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공동체 활동계획서

(공동체 명 기재)

1. 공동체 활동계획 ※ 분량 자율

- ①~③ 필수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① 한옥 공간 활용 계획
 - ②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기획·운영 계획
 - ③ 우리 공동체 활동이 지역 공동체 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

※ 서류심사 합격자는 공사의 별도안내에 따라 본 활동계획서를 발표용 포맷(PPT,PDF 등 파일 유형은 불문)으로 개별 작성하여 2021.1.18.(화) 18:00까지 최초 지원시 지원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작성

2. 우리 공동체 소개 등 ※ 분량 자율

- 귀 공동체의 구성 배경, 주요활동(예정된 활동 등 포함) 등이 공동체의 강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기타 자랑할 만한 성과나 포부 등을 추가로 자유롭게 서술하셔도 무방
-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동의서

서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입주 신청서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만4년까지 공모사업 진행 및 입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자의 본인 식별, 거주지역·기간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4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서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구성원 각 1장씩 작성 및 제출

※ 본인 성명 기재시 서명으로 간주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공유재산(공공한옥) 사용 허가 조건 (입주시 배부 및 동의서 징구)

제1조(총 칙) 본 조건은 서울특별시(이하“시”)가 소유 및 관리 중인 공유재산(서울 공공한옥 원서동 24외1)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조건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준용) 본 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서울 공공한옥”이라 함은 우리 문화의 보존과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소유·관리하는 한옥이다.
- ② “사용허가”라 함은 위 허가대상 서울 공공한옥에 대한 사용승낙을 말한다.
- ③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시설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허가기간 종료 후 자동소멸된다.
- ④ “사용자”라 함은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 후 시의 승인허가 및 시와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 ⑤ “공공임대한옥 운영·관리대행 협약”에 따라 본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시”의 권리와 의무 행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행한다.

제3조(용도) 위 재산의 용도는 “주거”로 한정되며, 이와 어긋나는 사용행위를 할 경우 시는 본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

- ① 최초(1차 년도) 사용료는 공고된 사용료로 한다.
- ② 2차 년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 ① 2차 년도 부터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연 사용료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연 사용료 전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독촉고지서가 송부되었음에도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체납되었을 때에는 시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한옥살이 체험기 작성 및 제출)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동안 복촌 및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기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한옥포털 등 게재를 통해 한옥살이 체험기를 홍보 및 공유하여야 한다.
- ② 제출일은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가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허가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 ① 허가재산의 한옥 보수 및 수선은 시가 부담하되,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멸실된 부분과 보수 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수선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사용 중 관리소홀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한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시는 사용인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시는 서울특별시가 처리하되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2. 허가재산을 전부나 일부를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3. 허가재산에 개축, 증축, 시설물 설치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4. 허가재산에 시설한 사용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5. 허가재산을 시의 허가 없이 영리를 위한 물품판매소나 영업소 등으로 전용(專用)하는 행위
- 6. 허가재산을 시의 허가 없이 사용자 이외의 관계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

제13조(사용인의 의무와 사용인에 대한 지도·감독)

-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이 지구단위계획 복촌1구역인 정주지역 내의 주택임을 인지하여 주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위 허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는 제2항의 보고·검사 결과 사용허가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용인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시는 허가재산의 운영과 관리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시설물 등 보수에 수반되는 소음,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 등을 수인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에 허가재산을 지체 없이 명도 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 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사용인이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사용인이 제7조의 한옥살이 체험기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사용인이 제12조 각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때
7. 사용인이 제13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때
8. 사용인이 제25조 제소전화해절차와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사용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10. 사용인이 입주 기준일(시가 별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을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에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 등의 변경) 시는 허가조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인은 시의 위 결정에 부당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시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재산을 시에 명도 하여야 한다.

1. 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가 사전에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가 요구하는 시일까지 사용인이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시 시는 임의로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임대료, 퇴거비 등 이에 비슷한 일체의 요구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명도 후 허가재산 내에 있는 사용인의 소유물을 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반출치 않을 때에는 시는 이의 반출, 보관, 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5. 시가 전호의 조치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인이 자기 소유물건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는 일반경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제반 조치에 소요된 기타 비용에 우선 충당한다.

제20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명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시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도난·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준용) 이 허가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송달의 책임) 시는 공공한옥의 소재지로 위탁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공공한옥 소재지로 하며, 공공한옥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인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참석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와 사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는 소의 확정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므로 사용기간 만료 이후 및 사용허가의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등을 갈음한다.

제26조(소송) 이 사용허가에 관한 기타 소송의 관할 법원은 공공한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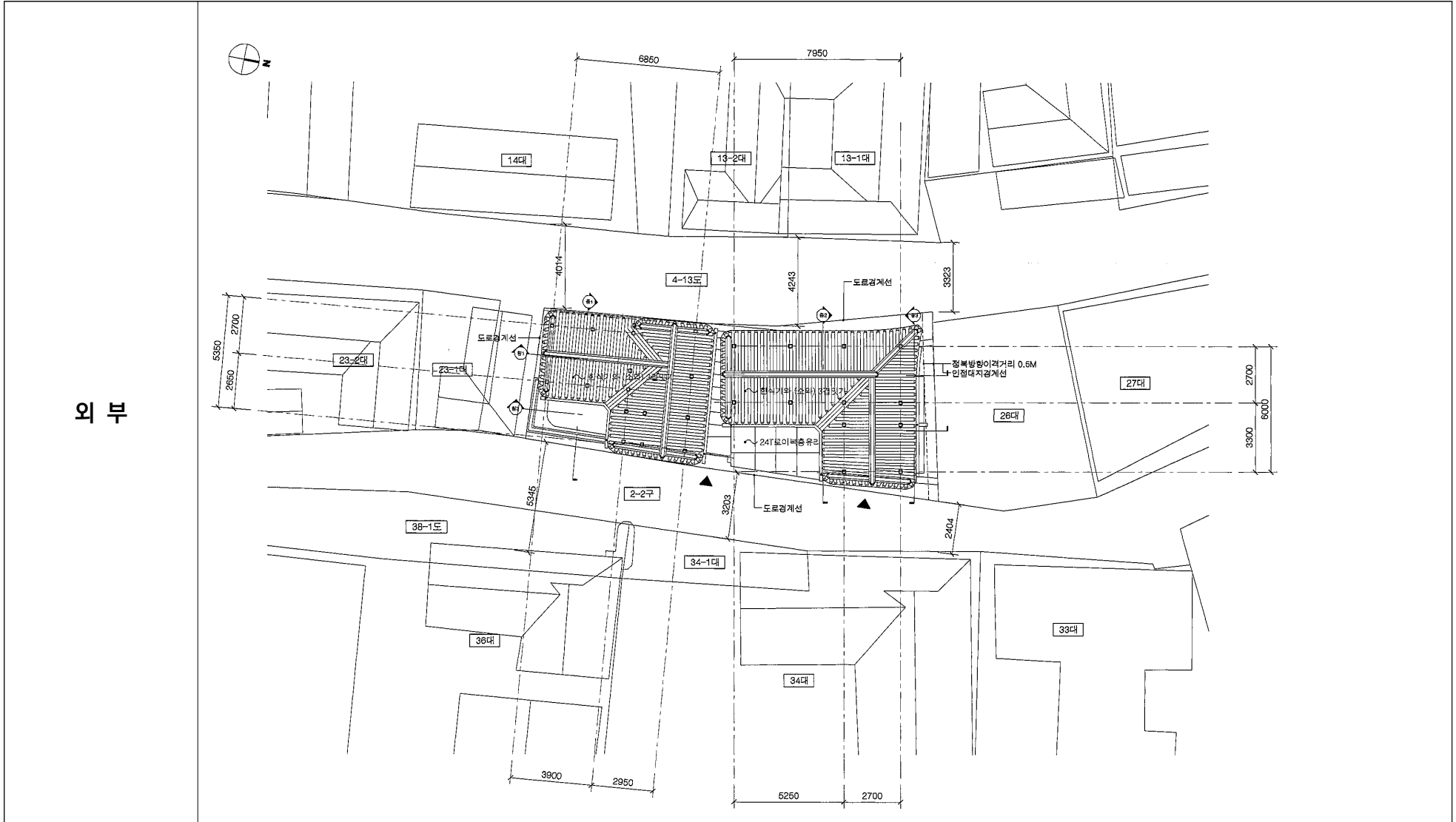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주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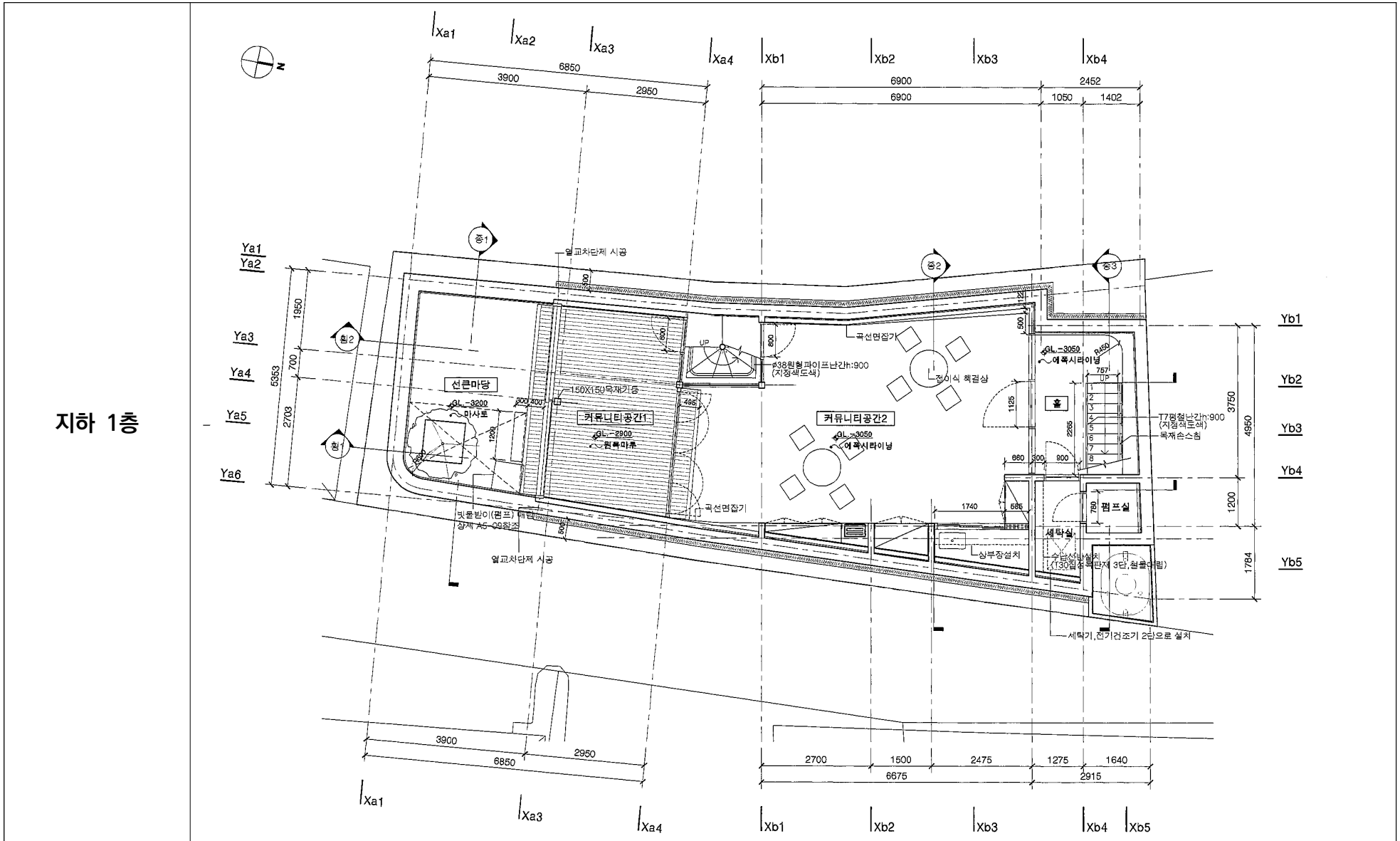
<p>외부 전경</p>	<p>지상1층 공유주방</p>
<p>지상1층 개별 주거공간 (총 4개실)</p>	<p>화장실 (총 3개실)</p>
<p>지상1층 다락</p>	<p>지하1층 세탁실</p>
<p>지하1층 커뮤니티 공간 (홀1)</p>	<p>지하1층 커뮤니티 공간 (홀2)</p>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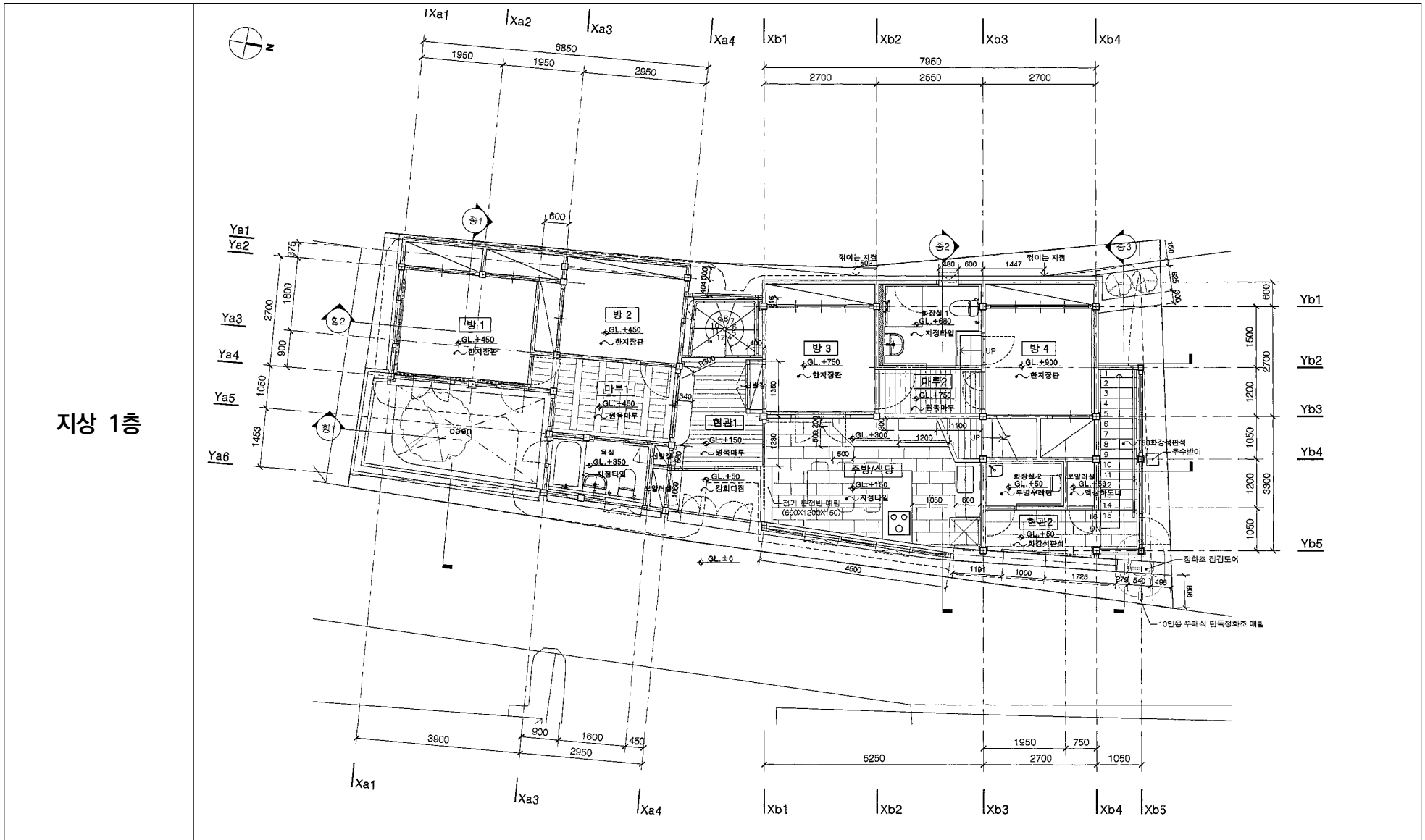
[붙임4] 도면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입주를 위해 구성된 복수 인원(3인~4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개인의 단독 접수 불가하며,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